

강원도의회 제300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강원도의회 제300회 임시회(5.6.~5.21.)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00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12건

상 임 위 원 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1. 05 21.)
사회문화 위원회 (6)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병석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윤지영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원태경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수진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미 의원	수정가결
경제건설 위원회 (2)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석 의원	수정가결
교육위원회 (4)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권순성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정유선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허소영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	허소영 의원	수정가결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00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1. 05. 21.(금)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단,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0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4)
- 공동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6),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속초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체육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인권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현장을 제정·선포하고, 스포츠인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해당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김병석 의원



권순성 의원



주대하 의원

▣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6)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평창2),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정선1),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4), 김수철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화천), 원태경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3),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속초1),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국민의힘·비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강원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및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권순성 의원



김진석 의원



장덕수 의원



김병석 의원



김수철 의원



원태경 의원



정수진 의원



주대하 의원



최종희 의원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 공동발의 :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3), 김진석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김수철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화천),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정선1),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이병헌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장애인 건강교육 및 상담,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내 보건소에서 재활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윤지영 의원



박윤미 의원



김진석 의원



김수철 의원



장덕수 의원



권순성 의원



김혁동 의원



심영미 의원



윤석훈 의원



이병헌 의원



조성호 의원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원태경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3)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도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은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수급자를 선정하여 생계·의료·주거·해산·장제·교육·보육·출산·양육·돌봄 관련 비용 및 월동·폭염·미세먼지 등 대책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 시설, 기관, 단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역량강화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의회운영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김상용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삼척1),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2),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인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의 기본지침인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맞게 조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 내용을 개정하여 사업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보호사업, 아동교육사업, 아동문화사업, 아동정서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정수진 의원



김진석 의원



권순성 의원



김상용 의원



신명순 의원



윤석훈 의원



정유선 의원



조성호 의원



조형연 의원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의회운영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김수철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화천), 박상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삼척2), 신도현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심상화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1),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속초1)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의 수상부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도 청소년상은 문화예술 부문, 과학기술 부문, 봉사 부문, 체육 부문, 면학 부문, 환경 부문, 효행 및 선행 부문 등으로 수상부문을 나누어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심영미 의원



김진석 의원



김경식 의원



김수철 의원



박상수 의원



신도현 의원



심상화 의원



윤지영 의원



주대하 의원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 공동발의 :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이병헌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규제완화 및 도시환경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대상 및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할 시장·군수가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시설 및 묘지 관련 시설의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 2021년 7월 9일부터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공개모집하고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여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조성호 의원



김경식 의원



이병헌 의원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4)

■ 공동발의 : 김상용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삼척1),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도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에너지 복지 사업의 지원 근거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위한 복지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김병석 의원



김상용 의원



조성호 의원



허민영 의원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 대표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 공동발의 :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3),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발의됐다. 도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과 강원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심장정지 환자 등의 기도 확보 방법,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응급의료 관련 법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및 응급상황에서 신고 요령 등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권순성 의원



박윤미 의원



심영미 의원



윤지영 의원

▣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대표발의 :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공동발의 : 김상용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삼척1), 김준섭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속초2),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나일주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정선2),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인제),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발의됐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상담 · 지원 및 교육 ·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시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친화적인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정유선 의원



김상용 의원



김준섭 의원



김혁동 의원



나일주 의원



조형연 의원



허민영 의원

▣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 공동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고성),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양양), 김준섭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속초2),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이종주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2),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철원2),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학습부진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허소영 의원



박효동 의원



김정중 의원



김준섭 의원



심영미 의원



이종주 의원



한금석 의원



허민영 의원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

- 대표발의 :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 공동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고성),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양양),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4), 안미모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철원2)

학교 구성원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원도 학생 · 학부모 ·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는 학생으로 구성되는 학생회를 둘 수 있고, 학생회에서는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예산운용, 학생 동아리 활동, 학생회칙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고, 교직원회에서는 교직원회칙의 제 · 개정, 교직원 복지 및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허소영 의원



박효동 의원



김정중 의원



김혁동 의원



남상규 의원



안미모 의원



정유선 의원



한금석 의원